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 ,)

1 ()

24

【해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일반 특정 소방대상물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본 규정 제정의 취지를 설명.

2 ()

1.

2.

3.

4

4.

49

76

5.

2

1

【해설】

⇒ 불임 1

3 () ()

4 ()

2 (“ ”)

- 1.
- 2.
- 3.
- 4.

【해설】

⇒ 최종 결정권자인 기관장에게 당해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 부여

※ 방화관리자 미선임 대상(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포함

5 ()

1. (" ")
26
2. 41 1 (" ")
3. 23 1
4. 23 2
1 3 , 5 6

【해설】 : 자격기준 해설

○ 제1호 :

○ 제2호 :

() .

○ 제3호 : 1

○ 제4호

⇒

⇒

⇒

13

⇒

2 1

6

2

※

2

⇒

2

1

6

6

2

※

2

☆ 주의사항 ☆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불가

【해설】

- 공공기관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도입을 위한 사항으로 방화관리 자격자가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강습교육 기간 동안 유예를 두어 공공기관 전체(소화기, 비상경보대상 제외)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화 규정
- 이 경우 기관장은 제4조에 의한 방화관리 책임 및 지정된 사람 감독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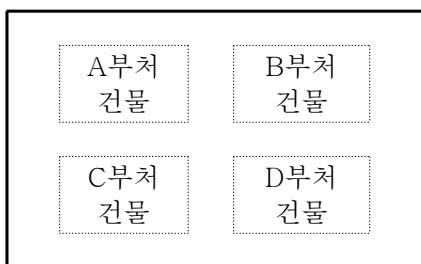
2 ()

【해설】

-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은 여러 개의 건축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 건축물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기관장이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별로 선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을 벗어난 구역으로 분산된 건축물을 말하며 기관장은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여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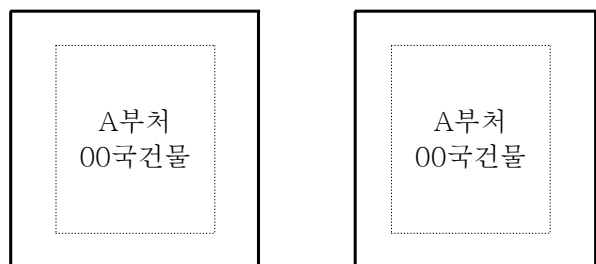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대지경계선 등 그림설명

○ 방화관리자 1명 선임가능
(관리기관이 별도 있을 경우)



대지경계선

○ 방화관리자 각각 선임



대지경계선

【해설】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

5

14

5 1

5 2

【해설】

-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선임한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습교육 접수시 발행하는 교육접수증(수강증) 등을 함께 제출,
- 수첩 취득시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자를 변경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

7 ()

5

20 6

【해설】

⇒ **붙임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7 2()

29 (“ ”) .

【해설】

○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업무가 계약서(협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정취지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의 감독적 직위로 인하여 기타 업무수행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의 대행만 가능한 것이며 자격기준을 대행하는 것은 아님.

8 ()

5

(41 1)

【해설】

○ 2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의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 기준이 아닌 공공기관 건축물 기준이며, 실무교육 미비로 인한 업무정지등 처분을 받을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예) A공공기관 B방화관리자가 A공공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C공공기관으로 인사 발령되어 방화관리자 선임시 C공공기관이 실무교육 대상일 경우 실무교육 수료 후 C공공기관에 적합한 방화관리업무 수행

9 ()

() .

【해설】

-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조항이며,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의 경우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업무로서 구획된 실(室)별로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 ()

(.)

,)

()

【해설】

- 기관장 및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예방 수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숙직자 및 방호원을 둔 건축물은 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함.

11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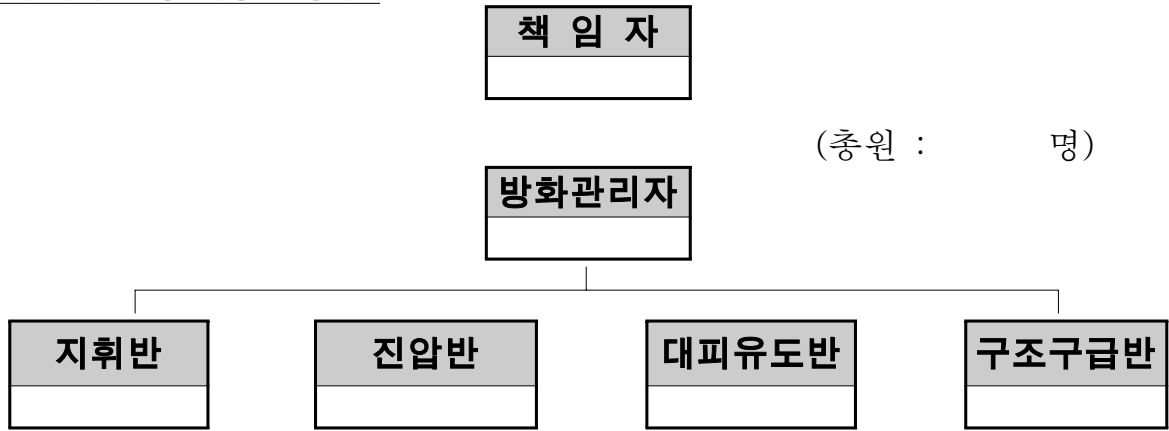
1

2

【해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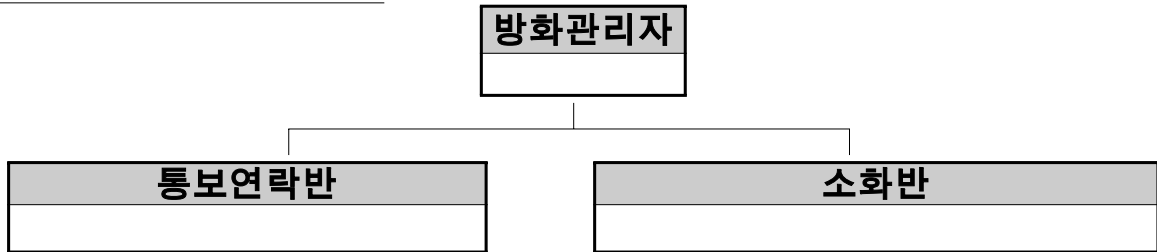
○ 방화관리자의 업무 중의 하나인 자위소방대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총원 : 명)

< 10 >



※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구성·운영 가능

13 ()

1.

2.

3.

4.

5.

6.

14 ()

2

, 1

10

.

.

1

.

1

2

.

【해설】

○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였을 경우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서 각 팀별 업무를 숙지하게 하여 유사시 각자의 업무를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

15 ()

(

.

)

1

40

.

,

2

5

.

1. 5

4

2. 1

4

1

1

2 2

5

1 6

6 30

【해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호에 의거 종합정밀 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함.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기술사 당해건물 점검가능

○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의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건축물이 있고 사용승인일이 다를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달에 속한 건축물을 기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달인 경우 6월말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도 됨

1

2

2

【해설】

○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 시 증축 사용승인일 기준적용, 다만 이미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증축되는 건축물은 기존 사용 승인일 기준적용

1

2

【해설】

○ 서식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제2004-31호)

63

65

66

17

16 2 20

19 27

【해설】

- 기관장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15일 이내에 직접 제출

1

2

【해설】

- 모든 공공기관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외관 점검표(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제2004-31호)

< 18140 ,2003.11.27>

() 2004 5 30 .

()

()

< 19009 ,2005.8.19>

() < 20258 , 2007.9.10>
1 () .

2

3 ()

15 3 " 20 .
29 " " 19 . 27 "

4

< 20443 ,2007.12.13>
2008 1 1 .

< 21410 ,2009.04.06>

1 () .

2 () 5 1

6 .

【붙임 1】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 적용 범위』

□ 공공기관 범위

1.

(), (, 119)

2. :

3. 4 (1)

4. 49

76

5. 2 1 2 2

【붙임 2】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책무(업무)』

○ () 24)

○ ()

○ 10

○ 22

○

○ ()

○

기타공공기관(199)

주무부처 기법세정부(3)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관민영화 (16)	위탁집행형 (64)	기타공공기관(199)
교육과학기술부(40)	(1)	(1)	(5)	(2)	(34)
외교통상부(3)	(1)	(1)	(2)	(3)	(3)
법무부(3)	(1)	(1)	(2)	(3)	(3)
국방부(3)	(1)	(1)	(2)	(3)	(3)
행정안전부(4)	(1)	(1)	(2)	(3)	(3)
문화체육관광부(31)	(2)	(3)	(3)	(1)	(23)
농림수산식품부(8)	(1)	(1)	(1)	(1)	(4)
지식경제부(67)	(2)	(3)	(3)	(1)	(38)
방송통신위원회(4)	(4)	(20)	(3)	(1)	(11)
보건복지가족부(17)	(1)	(5)	(4)	(2)	(2)
환경부(6)	(1)	(1)	(4)	(1)	(4)
노동부(10)	(1)	(1)	(4)	(1)	(18)
국토해양부(38)	(4)	(9)	(7)	(1)	(24)
국무총리실(24)	(4)	(9)	(7)	(1)	(24)
국가보훈처(3)	(1)	(1)	(1)	(1)	(4)
문화체육관광부(1)	(1)	(1)	(1)	(1)	(4)
산림청(1)	(1)	(1)	(1)	(1)	(4)
중소기업청(6)	(1)	(1)	(1)	(1)	(4)
특허청(2)	(1)	(1)	(1)	(1)	(4)
금융위원회(18)	(5)	(2)	(2)	(2)	(11)
방위사업청(2)	(1)	(1)	(1)	(1)	(2)
공정거래위원회(1)	(1)	(1)	(1)	(1)	(2)
경찰청(1)	(1)	(1)	(1)	(1)	(2)
소방청(1)	(1)	(1)	(1)	(1)	(2)